모듈 3 첨부 문서

신규 gTLD 분쟁 해결 절차

이 절차는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신규 gTL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 절차는 각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업체(DRSP)에서 관리하는 모든 진행에 적용됩니다. DRSP마다 일련의 특정 규칙을 가지고 있거나 진행에도 적용되는 보완 절차를 가집니다.

신규 GTLD 분쟁 해결 절차

제1조 ICANN의 신규 gTLD 프로그램

(a)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인터넷에 신규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gTLDs")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ICANN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신청자가 신규 gTLD를 신청할 수 있는 연속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b) 신규 gTLD 프로그램에는 신규 gTLD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조직과 신규 gTLD 분쟁 해결 절차("절차")에 따라 해당 gTLD가 해결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개인 또는 조직 간의 분쟁에 이은 분쟁 해결 절차가 포함됩니다.

(c) 분쟁 해결 진행은 이 절차 및 제4조 (b)에 설명된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에 따라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업체("DRS")가 관리합니다.

(d) 신청자는 신규 gTLD를 신청함으로써 이 절차 및 제4조 (b)에 설명된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의 제기자는 신규 gTLD에 이의신청함으로써 이 절차 및 제4조 (b)에 설명된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양쪽 당사자는 ICANN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이 절차를 훼손할 수 없으며, 관련 DRSP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제2조 용어 정의

(a) "신청자" 또는 "응답자"는 ICANN에 신규 gTLD를 신청한 조직이며 이의제기에 응답하는 당사자입니다.

(b) "이의 제기자"는 신청서가 제출된 신규 gTLD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개인이나 조직입니다.

(c) "패널"은 이 절차 및 제4조 (b)에 설명된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에 따라 DRSP가 임명한 1명 또는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입니다.

(d) "전문가 판결"은 이 절차 및 제4조 (b)에 설명된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진행에서 패널이 이의제기의 타당성에 대해 내리는 결정입니다.

(e) 신규 gTLD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이 절차에서 확인되며, 다음과 같이 ICANN 일반도메인이름지원기구(GNSO)에서 2007년 8월 발행한 신규 일반 최상위 도메인 도입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i) "문자열 혼란 이의"는 잠재적 gTLD로 구성된 문자열이 기존의 최상위 도메인 또는 해당 신청서 기간에 신청된 다른 문자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이의를 말합니다.

(ii) "기존 법적 권리 이의"는 잠재적 신규 gTLD로 구성된 문자열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칙에 따라 승인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기존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이의를 말합니다.

(iii) "도덕 및 공중 질서 이의"는 잠재적 신규 gTLD로 구성된 문자열이 국제적 법칙에 따라 인정되는 도덕 및 공중 질서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법률 규범과 상반된다고 주장하는 이의입니다.

(iv) "커뮤니티 이의"는 커뮤니티의 중요한 부분부터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자열까지 해당 신청서에 대해 중요한 대립이 있음을 주장하는 이의입니다.

(f) "DRSP 규칙"은 이 절차에 따라 이의 진행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특정 DRSP 절차의 규칙입니다.

제3조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업체

다음과 같은 DRSP에서 다양한 범주의 분쟁을 관리합니다.

(a) 문자열 혼란 이의는 국제분쟁해결센터에서 관리합니다.

(b) 기존 법적 권리 이의는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중재 센터에서 관리합니다.

(c) 도덕 및 공중 질서 이의는 국제상공회의소의 국제전문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다.

(d) 커뮤니티 이의는 국제상공회의소의 국제전문기술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제4조 적용 가능한 규칙

(a) 모든 진행은 패널에 앞서 이 절차 및 특정 이의 범주에 적용되는 DRSP 규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진행은 전문가 판결로 간주되며 패널 구성원이 전문가 역할을 수행합니다.

(b)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문자열 혼란 이의의 경우,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은 ICANN의 신규 gTLD 프로그램에 대한 ICDR 보완 절차입니다.

(ii) 기존 법적 권리 이의의 경우,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은 신규 gTLD 분쟁 해결의 WIPO 규칙입니다.

(iii) 도덕 및 공중 질서 이의의 경우,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은 국제상공회의소의 전문기술 규칙입니다.

(iv) 커뮤니티 이의의 경우,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은 국제상공회의소의 전문기술 규칙입니다.

(c) 이 절차와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이 상충하는 경우 이 절차가 우선합니다.

(d) 관련될 경우, 진행 위치는 진행을 관리하는 DRSP의 위치입니다.

(e) 모든 경우에, 패널은 관계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각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제5조 언어

(a) 이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제출 및 진행의 언어는 영어입니다.

(b) 패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국어로 된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련되는 모든 텍스트의 영어 번역본과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6조 커뮤니케이션 및 시간제한

(a) DRSP 및 패널과 당사자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전자 방식으로 ICANN에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형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료(예: 증거 모델)를 제출하려는 당사자는 패널에게 비전자식 제출을 허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패널은 단독 재량으로 비전자식 제출을 허용할지 판단합니다.

(b) DRSP, 패널, 신청자 및 이의 제기자는 진행과 관련된 모든 통신문서(패널과 DRSP 간, 패널 간의 기밀 문서와는 별도)의 사본을 서로에게 제공하고 ICANN에 제공합니다.

(c) 시간 제한 개시일을 결정하기 위해, 통지 또는 커뮤니케이션은 본 조항 (a) 및 (b) 단락에 따라 전달되는 날짜에 수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d) 시간 제한 준수를 결정하기 위해, 통지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이 시간 제한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본 조항의 (a) 및 (b) 단락에 따라 발송되는 경우 통지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 전송, 작성 또는 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e) 이 절차에 따른 기간을 계산하기 위해, 이 기간은 통지 또는 기타 커뮤니케이션을 수신한 날짜 다음 날에 시작됩니다.

(f) 별도의 설명이 없는 경우, 이 절차에 제공된 모든 기간은 달력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이의제기

(a) 신청서가 제출된 신규 gTLD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의"). 제안된 신규 gTLD에 대한 모든 이의는 ICANN 해당 gTLD의 신청서를 확인하는 보고서를 공개한 후 90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b) 이의는 DRSP에서 허용한 모델 양식을 사용하여 해당 DRSP에 제출하고 ICANN 및 신청자에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c)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자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문자열 혼란 이의는 다음 주소에 제기해야 합니다. [●].

(ii) 기존 법적 권리 이의는 다음 주소에 제기해야 합니다. [●].

(iii) 도덕 및 공중 질서 이의는 다음 주소에 제기해야 합니다. [●].

(iv) 커뮤니티 이의는 다음 주소에 제기해야 합니다. [●].

(d) 모든 이의는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i) 둘 이상의 근거로 신청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이의 제기자는 해당 DRSP에 별도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ii) 둘 이상의 gTLD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이의 제기자는 각 gTLD에 대한 별도의 이의를 해당 DRSP에 제기해야 합니다.

(e) 잘못된 DRSP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DRSP가 이의 제기자에게 과실을 즉시 통지하고 제기된 이의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의 제기자는 과실 통지를 받은 후 7일 내에(잘못 제출한 이의가 무시됨) 올바른 DRSP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과실을 바로잡습니다. 과실 통지를 받은 후 7일 내에 올바른 DRSP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 절차의 제7조 (a) 조항에 따른 이의 제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면 이의가 시간 제한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8조 이의 내용

(a) 이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i) 이의 제기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ii) 이의 제기자가 주장하는 사실의 근거에 대한 진술서

(iii) 다음을 비롯한 이의 근거에 대한 설명

(aa) 이 절차의 제2조 (e)에 설명한 대로, 제기할 이의의 근거에 대한 진술서

(bb) 이의의 유효성과 이의가 받아들여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b) 첨부 문서를 제외하고 이의의 중요한 부분은 5,000단어 또는 20페이지로 제한됩니다. 이의 제기자는 이의의 증거 문서 또는 공식 문서 사본을 설명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c) 이의를 제기하는 동시에, 이의 제기자는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에 따라 규정된 이의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의에 지불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DRSP에 이의가 접수된 후 10일 내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해당 이의는 기각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9조 이의의 행정 심사

(a) DRSP는 이 절차의 제5-8조와 적용 가능한 DRSP 규칙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이의에 대해 행정 심사를 수행하고 이의 접수 후 14일 내에 심사 결과를 이의 제기자, 신청자 및 ICANN에 알립니다. DRSP는 시간 제한 연장 통보에 설명된 이유에 따라 시간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b) 이의가 이 절차의 제5-8조와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을 따르는 경우, DRSP는 이의가 등록되어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c) 이의가 이 절차의 제5-8조와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DRSP는 이의에서 행정상의 부족한 사항을 5일 내에 정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이의에서 부족한 사항이 정정되었지만 이 절차의 제7조 (a)에 규정된 이의 제출 제한 시간이 경과한 후 제출하면 시간 제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d) 이의가 이 절차의 제5-8조와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제9조 (c)에 지정된 기간 내에 이의의 부족한 사항이 정정되지 않으면, DRSP는 이의를 기각하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의 제기자가 이의 제기 마감일 내에 신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절차를 준수하는 신규 이의 신청에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DRSP의 이의 심사는 이 절차의 제7조 (a)에 규정된 이의 제출 시간 제한 적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e) 이의 처리가 등록되는 즉시, 제9조 (b)에 따라 DRSP는 이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합니다. (i) 이의가 제기된 제안된 문자열, (ii) 이의 제기자 및 신청자의 이름, (ii) 이의 근거, (iv) DRSP에 이의가 접수된 날짜

제10조 ICANN의 분쟁 공고

(a) 지정된 신청 기간에서 gTLD 신청서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 마감일 30일 내에, ICANN은 허용되는 모든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웹 사이트에 공개합니다("분쟁 공고"). 또한 ICANN은 분쟁 공고 게시를 각 DRSP에 직접 알립니다.

(b) ICANN은 이 절차에 따라 모든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 둘 이상의 DRSP에서 이의가 보류 중인 개별 신청사와 관련하여 DRSP를 조정합니다.

제11조 이의 응답

(a) 분쟁 공고를 받은 후 각 DRSP는 (i) 신규 gTLD 신청자에게 하나 이상의 허용 가능한 이의가 DRSP에 제기되었음을 알리고 (ii) 각 의의 제기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b) 신청자가 각 이의에 대해 응답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응답"). 신청자는 제11조 (a)에 따라 DRSP가 보낸 통지를 받은 후 30일 내에 응답을 제출해야 합니다.

(c) 응답은 DRSP에서 허용한 모델 양식을 사용하여 해당 DRSP에 제출하고 ICANN 및 이의 제기자에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d) 응답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i) 신청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주소, 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ii) 이의 진술서에 대한 요점별 이유

(e) 첨부 문서를 제외하고 응답의 중요한 부분은 5,000단어 또는 20페이지로 제한됩니다. 신청자는 응답의 증거 문서 또는 공식 문서 사본을 설명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f) 응답을 신청하는 동시에, 신청자는 관련 DRSP에서 규정하여 공개한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고(이의 제기자가 지불하는 신청 수수료와 금액이 같을 수 있음) 응답에 지불 증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DRSP에 응답이 접수된 후 10일 내에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지불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응답은 기각되며 이의가 등록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g) 응답이 이 절차의 제11조 (c) 및 (d)(1)과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DRSP는 응답에서 행정상의 부족한 사항을 5일 내에 정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응답에서 행정상 부족한 사항이 정정되었지만 이 절차에 규정된 응답 제출 제한 시간이 경과한 후 제출하면 응답이 시간 제한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h) 신청자가 30일 제한 시간 내에 이의에 대한 응답을 신청하지 못하면, 신청자가 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이의가 등록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가 지불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이의 통합

(a)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실행 가능하며 실용적일 경우, DRSP는 여러 이의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예: 둘 이상의 이의 제기자가 동일한 근거로 동일한 gTLD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DRSP는 제11조 (a)에 따라 통지를 전달하기 전에 통합 결정을 내리며 적절한 경우 통지 시 통합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b) DRSP가 둘 이상의 이의 통합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 또는 이의 제기자는 조항 11 (a)에 따라 DRSP 통지를 받은 후 7일 내에 이의 통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DRSP가 특정 이의를 통합하기로 결정하면, 통합된 진행에서 신청자의 응답 마감 시한은 DRSP의 통합 통지를 받은 후 30일입니다.

(c) 이의 통합 여부를 결정할 때 DRSP는 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선입견 또는 불편함에 대해 통합 결과의 이익을 비교 검토합니다(시간, 비용, 결정 일관성 등).

(d) 제2조 (e)에 설명되었듯이, 여러 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이의는 통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패널

(a) DRSP는 응답을 받은 후 30일 내에 전문가 패널을 선발하여 지명합니다.

(b) 전문가 수 및 특정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문자열 혼란 이의는 1명의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ii) 기존 법적 권리 이의는 지적 재산권 분쟁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1명 또는 3명(모든 당사자 간 동의가 있을 경우)이 진행합니다.

(iii) 도덕 및 공중 질서 이의는 신청자 및 이의 제기자의 국적과 다른 국적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법률 전문가 3명(그 중 한 명이 의장으로 지명됨)이 진행합니다.

(iv) 커뮤니티 이의는 1명의 전문가가 진행합니다.

(c) 이 절차에서 활동하는 모든 전문가는 공정하게 진행하며 당사자와 관련되지 않습니다.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에 각 전문가가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d)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에 전문가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전문가 교체에 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e) 법정에서 요구하거나 당사자의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전문가는 이 절차에 따른 전문가 판결과 관련하여 사법 기관이든 중재 기관이든 모든 보류 중 또는 향후 진행에서 활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14 조비용

(a) 각 DRSP는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에 따라 이 절차에서 관리하는 진행 비용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DRSP의 행정 수수료는 물론 패널 구성원의 수수료 및 경비가 포함됩니다("비용").

(b) 패널이 구성된 후 10일 내에 DRSP는 총 비용을 개산하여 각 이의 제기자 및 신청자/응답자에게 DRSP에 전체 금액을 선불하도록 요청합니다. 각 당사자는 DRSP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내에 비용을 선불로 지급하고 DRSP에 지불 증거를 제출합니다. 당사자가 지불하는 각 신청 수수료는 비용 선불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c) DRSP는 총 비용 개산을 수정하여 진행 중에 당사자에게 추가 선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는 경우:

(i) 이의 제기자가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기각되고 이미 지불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ii) 신청자가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신청자가 지불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 진행이 종료되고 패널이 전문가 판결을 내리면, DRSP는 패널에서 결정한 승소 당사자에게 선불 비용을 환불합니다.

제15조 대표자 및 보조자

(a) 당사자가 선택한 사람이 당사자를 대표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b) 각 당사자는 대표자 또는 보조자의 이름, 연락처 정보 및 역할을 ICANN, DRSP 및 상대 당사자(또는 이의가 통합된 경우 여러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제16조 협상 및 중재

(a) 당사자는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언제든지 협상 및/또는 중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b)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DRSP는 중재자로서 당사자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c) 당사자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이 절차에 따른 당사자 간의 분쟁 또는 동일한 gTLD와 관련한 이 절차에 따른 기타 진행에서 전문가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d) 협상 또는 중재 수행 자체만으로는 분쟁 해결 진행을 정지하거나 이 절차에 따른 모든 마감 시한을 연장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참여를 요청할 때, DRSP 또는 패널(패널 구성 후)이 마감 시한 연장 또는 진행 정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 그러한 연장 또는 정지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이의 관리를 지연할 수 없습니다.

(e) 협상 및/또는 중재 중에 당사자가 이 절차에 따라 DRSP에 회부된 사안에 대해 타협하는 경우, 당사자가 DRSP에 이를 알리면 DRSP는 진행을 종료하고(이 절차에 따른 당사자의 지불 의무가 충족되는 경우) 그에 따라 ICANN 및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7조 추가 서면 제출

(a) 패널은 당사자가 이의 및 응답 이외에 기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지 결정하고 이러한 제출의 제한 시간을 확정합니다.

(b) 패널에서 확정한 추가 서면 제출 시간 제한은 패널이 DRSP와 상의하여 제한 시간을 연장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결정하지 않는 한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증거

신규 gTLD에 대한 분쟁을 적절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문서 제출 절차가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패널이 당사자에게 추가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청문회

(a) 이 절차 및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에 따라 분쟁은 일반적으로 청문회 없이 해결됩니다.

(b) 패널은 독자적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청문회 개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c) 패널이 청문회 개최를 결정하는 경우:

(i) 패널은 청문회를 수행하는 방법과 장소를 결정합니다.

(ii) 진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하면 청문회는 화상회의를 통해 수행합니다.

(iii) 패널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2일 이상 필요하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청문회는 1일로 제한됩니다.

(iv) 패널은 청문회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수행할지 결정합니다.

제20조 표준

(a) 패널은 ICANN이 각 이의 범주에 대해 정의하고 제2조 (e)에 설명된 표준을 적용합니다.

(b) 또한 패널은 제출된 진술서 및 문서와 적용 가능한 모든 규칙 또는 원칙에 있는 사실을 참조하고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c) 이의 제기자는 적용 가능한 표준에 따라 이의의 정당성을 입증합니다.

제21조 전문가 판결

(a) DRSP 및 패널은 패널 구성 후 45일 내에 전문가 판결이 내려지도록 노력합니다. 이의 통합 등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DRSP와 협의하여 이 기간을 잠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b)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에서 정밀 검사가 특별히 제외되지 않는 한, 패널은 전문가 판결에 서명하기 전에 DRSP가 정밀 검사할 수 있도록 제출합니다. DRSP가 패널에게 제안하는 수정 사항(있는 경우)은 전문가 판결 포럼에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서명된 전문가 판결은 DRSP에 전달된 후 당사자 및 ICANN에 전달됩니다.

(c) 패널이 3명으로 구성된 경우 전문가 판결은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d) 전문가 판결은 서명 형식으로서 승소 당사자를 확인하고 해당 당사자의 승소 이유를 설명합니다. 패널 구성 이전의 모든 진행에 따라 신청자 또는 이의 제기자에 대한 구제 절차는 이의 유효 또는 기각으로 제한되며, 이 절차의 제14조 (e) 및 적용 가능한 DRSP 규칙의 관련 조항에 따라 패널이 전문가 판결에서 내린 승소 당사자에게 선불 비용을 DRSP가 환불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e) 전문가 판결에는 판결을 내린 날짜가 있어야 하며 해당 전문가가 서명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전문가 판결에 서명하지 않으면 서명이 없는 이유에 대한 진술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f) DRSP 규칙에서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패널은 전자 양식의 전문가 판결 사본 이외에 서명된 전문가 판결 하드카피를 DRSP에 제공해야 합니다.

(g) 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전문가 판결은 DRSP 웹 사이트에 전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제22조 의무 면책

적용가능한 DRSP 규칙에 규정된 의무 면책 이외에 전문가, DRSP/직원, ICANN/위원회 구성원/직원/고문은 이 절차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진행과 관련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23조 절차 변경

(a) ICANN은 내규에 따라 이 절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b) 분쟁 해결 진행에 적용 가능한 이 절차의 버전은 신규 gTLD 신청서가 제출된 날짜에 발효된 버전입니다.